

경기시설 및 용품 공인 운영 지침

제정 2024. 11. 12.

개정 2024. 12. 09.

제1조(목적)

협회의 경기시설 및 용품 공인 규정에 대한 운영방법과 인증 신청자에게 인증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공하여 신청된 인증이 공평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조(인증 관련 정보 제공의 범위)

인증담당자는 인증신청자에게 평가와 절차에 대한 최신 정보,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및 인증신청자가 지불하는 수수료 등에 관한 아래 정보를 제공한다.

- ① 인증 신청의 요구사항(구비서류, 관련 절차 및 규칙과 수수료 및 처리기간 등)
- ② 인증 대상이 해당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하여 인증신청자와 인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품인증서의 소유권은 인증신청자에게 있다.
- ③ 제품인증서가 발급된 제품에는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 ④ 인증 대상의 인증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시 통보받아야 한다.
- ⑤ 협회가 수행하는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불만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인증받은 대상의 변경사항 및 인증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⑦ 인증마크 표시는 협회에서 제시한 표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조(처리기한 및 인증서 교부)

- ① 시험기관 등의 시험 : 서류 접수 후 60일 이내 실시한다. 다만, 품질기준에 시험 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하며 위탁시험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제품 시험 결과에 따라 재시험을 진행할 경우 시험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 ② 공인위원회 심사 : 시험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실시한다.
- ③ 제품인증서 교부 : 인증위원회 심의 후 계약서 체결 및 제품인증서를 교부한다.
- ④ 시설(경기장)인증서 교부 : 공인위원회 심의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인증 현판(시설부착용)을 제작하고, 시설(경기장)인증서를 교부한다.
- ⑤ 단,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4조(인증(변경)신청 요건)

- ① 인증 대상은 협회가 고시한 품목에 한한다.
- ② 인증신청의 범위는 신청 대상에 따라 해당 인증심사기준의 “인증의 구분”을 참조하여 인증신청자가 결정한다.
- ③ 인증신청자는 신청 대상이 과거 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인증서의 변경신청은 인증업체가 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 또는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에 한한다.
- ⑤ 인조잔디 제품 인증 신청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최근 3년이내 축구장용(풋살장 포함) 인조잔디 제품 납품 실적이 30,000 m² 이상인 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실적증명서 등)

2) 한국산업표준 ‘KS F 3888-1’ 인증을 받은자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무관)

제5조(인증(변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① 인증신청자는 인증대상별 인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인증업체가 인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제품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또는 인증업체 공문 등을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변경) 신청서 접수)

- ① 신청 요건 구비가 적절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인증업체)에게 2회에 한하여 각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자(인증업체)가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자(인증업체)에게 문서로 반려할 수 있다.
- ② 인증담당자는 신청서 기재사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신청자(인증업체)에게 기본수수료, 인증심사원 출장비, 인증심사원 수당, 제품시험수수료, 시료운반·조작비 등 납부를 안내하고, 인증신청자(인증업체)는 수수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갱신 신청)

인증 만료되는 인증업체가 인증기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기간 만

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제출하고, 수수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의 철회 등)

- ① 신청인이 인증 신청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는 폐기한다.
- ② 신청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기 3일 전까지 인증 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는 납부 받은 신청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 3일 전에 인증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납부 받은 신청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9조(인증 심사)

- ① 제품 인증 신청자에 대한 현장(공장) 심사는 각 제품별 KS 인증으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협회는 심사반을 구성하여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성능 시험은 협회에서 지정하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며, 위탁 기관은 시험이 완료되면 시험성적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③ 협회 공인위원회는 위탁 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신청 기관(업체)의 제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공인 심의를 진행 한다.
- ④ 협회의 공인위원회는 인조잔디 경기장에 대한 인증 심사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1) 제품 인증 유효기간내 인조잔디 설치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경기장은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 조성된 경기장으로 간주하며, 준공 이후 인증을 취득

한 제품을 사용한 경기장도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 조성된 경기장으로 간주한다.

2) 인증 유효 기간이 만료된 제품이 설치된 경기장의 재인증 심사시 해당 경기장은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 조성된 경기장으로 간주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 이후 품질 기준이 상향되는 등 기준이 변경되어 해당 제품의 성능을 인증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인증 제품을 사용한 경기장으로 간주한다.

- ⑤ 협회는 공인위원회의 외부 위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회의참가비와 인증 심사비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이사회 회의 참가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0조(인증 계약 및 인증 마크 등의 표시)

① 협회는 인증업체가 인증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인증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실시되는 것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인증업체가 인증마크 등을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함을 인증계약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인증표시는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

2) 인증업체는 인증 계약에 따라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할 수 있다.

3) 인증마크는 인증서에 명시된 인증범위와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광고물인 경우 반드시 인증범위를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대광고 문안은 사용할 수 없다.

(예 : 세계적 품질확보, 국내 최고의 품질 우위 확보 등)

5) 인증마크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인쇄 및 인장, 각인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6) 인증마크 사용요령에 대한 기타 의문사항은 반드시 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③ 인증마크의 소유권은 협회에 있다.

제11조(인증의 취소)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인증업체의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인증단체는 인증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인증 받은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인증업체는 취소 전에 인증단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인증업체는 2)항에 의해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④ 인증단체는 인증업체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인증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 하고 인증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⑤ 인증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요청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지위승계)

① 인증을 받은 인증업체가 공장·현장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

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장·현장을 양수받은 자,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인증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단순한 대표자 변경 및 상호변경은 변동사항에 따라 인증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③ 지위승계 받은 경우 지위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제13조(부칙)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인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별지 제1-1호 공인구 검정 신청서 양식]

KFA 공인구 검정 신청서

제조사 정보				
제조사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번호		
본사주소				
공장주소				
공인구 담당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		
공인료 납부 담당자		계산서 발송 이메일		
공인구 검정신청 제품내역				
모델명(공식명칭)	규격	공인종류	전년도 생산량	금년도 생산량

위와 같이 대한축구협회 공인구 검정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1. KFA 공인구 검정 신청서 1부
2. 공인구 계약서 2부(직인날인)
3. 제품 사양서(모델별)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명 : (인)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장 귀하

[별지 제1-2호 검정 신청 제품사양서]

KFA 공인구 검정 신청 제품사양서	
제조사명	
공인종류	<input type="checkbox"/> KFA PRO <input type="checkbox"/> KFA BASIC
모델명	
규격	<input type="checkbox"/> 4호 <input type="checkbox"/> 풋살 <input type="checkbox"/> 5호
유형	<input type="checkbox"/> 야외축구 <input type="checkbox"/> 풋살 <input type="checkbox"/> 비치사커
구성유형	<input type="checkbox"/> 바느질 <input type="checkbox"/> 접착식
구성패널 수	
표면 특징(구조_	
포장 재료	<input type="checkbox"/> 인조가죽 <input type="checkbox"/> 동물 가죽
재료 구성	
표명 층 두께(mm)	(mm)
표면 구성에서 재료 층 수	
내부 주머니 재료	
밸브명	
밸브 중량(g)	(g)
밸브 패널 묘사	
제품 이미지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KFA 공인구 계약서

대한축구협회 공인 축구공 제품의 승인과 관련하여, 대한축구협회(이하 “KFA”라 한다)와 공인의 승인을 취득하고자 하는 축구공 제품의 취급업체(한국 내에 법인을 두고, 축구공을 제조 및/또는 수입하여 유통, 판매하는 기업으로, 이하 “업체”라 한다)는 상호 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 “KFA”와 “업체”는 대한축구협회 공인용구 승인규정을 준수한다.

제 2조 : “업체”가 공인의 승인을 신청하는 축구공 제품은, “KFA”가 지정한 ‘경기용 축구공 시험 및 성능 규격’에 따라 공인구와검정구로구분하여“업체”에게 통보한다.

제 3조 : “업체”는 지정된 공인 신청 기간 내에 공인 승인에 필요한 서류 및 시험용 축구공 제품 샘플(각 제품별 10개, “업체”선택에 따라 회수 가능)을 ‘시험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해당 축구공 제품이 적합한 성능규격을 달성하는 경우, 공인의 승인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업체”가 신청한 공인 검정 절차는 “KFA”가 정하는 바의 공인료를 “KFA”의 지정계좌(하나은행 377-910006-29804 예금주: 사단법인대한축구협회)에 납부 사실이 확인된 후 시작되며, 공인 승인이 결정된 축구공 제품에 대하여 “KFA”는 공인증을 발급한다.

제 4조 : “업체”는 공인 축구공 제품의 판매 시, “KFA”가 지정한 바의 ‘KFA PRO’와 ‘KFA BASIC’의 등급을 드러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KFA PRO’와 ‘KFA BASIC’에 사용되는 공인마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KFA”의 자산이므로, “업체”는 여하한 종류의 공인마크를 이용한 광고 또는 프로모션 행위 시 “KFA”의 사전 서면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마크의 경우 반드시 “KFA”가 제공하는 로고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KFA”는 공인효력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조 : 공인 유효 기간은 00년 00월 00일로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1년간으로 하며, 동 기간 중이라도 “KFA”가 공인 승인한 축구공 제품과 동일성을 가지는 제품이 결함, 하자 등으로 적합한 성능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KFA”가 판단하는 경우, “KFA”가 해당 축구공에 대하여 공인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00년 00월 00일 이후에는 공인 유효기간 중 “업체”에 의하여 생산되었으나 판매하지 못한 제품에 한정하여 추가 6개월간의 재고소진 기간을 허용하도

정보공개동의서

본 신청자는 (사)대한축구협회에서 인증업무 수행 시 획득한 정보 (기밀사항)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또는 법인번호):

연 락 처 :

e - mail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대한축구협회장 귀하

대표자 서약서			
신청자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p>본 신청자는 인증을 신청함에 있어 협회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절차 등에 관한 모든 요령을 충분히 숙지 및 이해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신청자는 관련 규정을 항시 준수하며, 평가, 사후관리, 재평가 및 불만 해결을 위해 필요한 문서의 조사 및 모든 장소에의 출입, 기록(내부심사보고서 포함)의 열람 및 직원과의 면담을 포함하여 인증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을 완비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인증을 받은 대상에 한하여 인증마크 표시를 할 것이며,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협회의 인증업무를 오도할 수 있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신청자는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인증 획득 사실이 언급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며, 협회의 요구에 따라 일체의 인증문서를 반환하겠습니다. 4. 본 신청자는 인증서, 인증마크 또는 그 어떤 일부라도 오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5. 본 신청자는 문서, 홍보물, 안내책자 또는 광고 등의 매체에 인증획득 현황을 언급할 경우 협회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인증제도와 관련한 이행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규정 및 법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평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6. 본 신청자는 협회가 인증심사시 (사)대한축구협회 위원의 참관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락하겠습니다. 7. 본 신청자는 제품 및 현장시험 결과에 따라 신청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인증 등급이 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하겠습니다.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청인인 :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사)대한축구협회장 귀하</p>			

[별지 제2-3호 인조잔디 제품인증신청서]

KFA 제품 인증 신청서

(신규인증 , 추가인증, 재인증)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본 사						
	공 장						
담당자		성명 :			소속 :		
		TEL :			E-mail :		
설 립 년 월 일				자 본 금			
종 업 원 수		총 명	사 무 직 명		생 산 직 명		
공 장 면 적		대지 m ²		건물 m ²		소 유	자가 · 임대
연간재료사용량		원사 재료: kg			백코팅 재료: kg		
연 간 생 산 실 적		m ²					
보 유 생 산 설 비		<input type="checkbox"/> 원사 방사기, <input type="checkbox"/> 매트 제작기, <input type="checkbox"/> 백코팅 건조가공기					
인 증 신 청 품 목		인조잔디 시스템명 :					
특 기 사 항							
<p>(사)대한축구협회 인조잔디 인증 규정에 의거 제품인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사)대한축구협회장 귀 하</p>							
첨 부 서 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 등록증, 공장 등록증 사본 2. 인조잔디 제품 규격서 3. 제조 설비 현황 및 운용 증빙자료(월간 전력사용량 등) 4. 재료 사용 내역 및 증빙자료(2년간 세금계산서 등) 5. 법령으로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제조 허가 사본 6. 제품 시험 면제신청서 및 증빙자료(IMS, FIFA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등) 7. KS F 3888-1 인증서 및 제품 구성품별 유해성 시험성적서 8.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인증마크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주)000(이하 “갑”이라 한다.)와 (사)대한축구협회(이하 “을 또는 협회”라 한다.)는 을이 갑에 대해 인증한 제품과 관련되는 인증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계약을 체결한다.(이하 이 계약을 “인증 계약”으로 한다)

< 인증 품목 >

인증번호	인증대상명	인증 주소	인증유효기간

제1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이란 인증을 말한다.
2. “인증서”란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증된 것을 증명하는 “을”이 “갑”에게 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3. “마크”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4. “인증대상”이란 “을”이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계약에 의해 인증되는 “갑”이 제조한 제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인증주소”란 인증대상을 제조 및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6. “현장심사”란 인증신청된 “갑”의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및 설치 현장의 기술적 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을”이 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7. “성능심사”란 인증신청된 “갑”의 제품 품질이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을”이 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8. “사후관리”란 “을”이 “갑”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갑”의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을”의 조치를 말한다.
9. “인증범위”란 인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품목(종류·등급·호칭·모델)의 표준명, 표준번호 또는 서비스의 분야 (종류·등급·호칭·모델) 표준명, 표준번호를 말한다.
10.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협회가 정한 인증심사 기준 및 인증업무규정을 말한다.

제2조(권리 및 의무)

1. “을”은 이 계약에 근거하여 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의 범위에 대한 “갹”의 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에 동의한다.
2. “갹”은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 받은 제품이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3. “갹”은 계약서·납품서 또는 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 받은 서비스가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4. “갹”은 성능심사시 “을”에게 제공한 시험용 제품 등과 동일 조건에 대해 인증 제품 등이 제조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5. “갹”은 “을”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광고 그 외의 방법(판매촉진용 인쇄물 등)으로 제3자에게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증을 받고 있지 않은 제품 또는 서비스와 혼동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6. “갹”은 인증에 관계되는 업무가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을”이 “갹”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갹”의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을”이 출입하여 현장심사 및 성능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7. 현장심사 및 성능심사와 관련되는 “을”의 비용은 “갹”이 부담하고 해당 비용의 금액은 “을”이 정하는 인증업무규정의 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을”이 심사의 일부를 “을”과 계약에 의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3조(마크 등의 표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갹”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1. 인증대상의 명칭 및 번호
2. 협회에서 정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등급·호칭, 모델
3. 인증번호
4. 인증기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에만 해당)
5. 인증업체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협회명
7.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인증표시 도표
8. 인증기준에서 제품의 품목 또는 서비스의 분야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9. 기타 “을”의 인증기준에 정한 사항

제4조(사용 조건 및 범위)

1. “을”은 “갑”에 대해서 “갑”이 제1조 제10호의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제2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 인증제품은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 등에, 인증서비스는 계약서·납품서 또는 보증서 등에 인증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동의한다. “갑”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인증서의 사본을 배포할 수가 있다.
2. “갑”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인증 제품 또는 사업장에서 제공된 인증 서비스에 한해서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가 있다.
3. “갑”의 인증마크의 표시는 인증 업무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인증계약의 유효기간)

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19조의 인증의 취소 또는 제25조에 의해 이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이 계약의 체결일(인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을”의 사후관리 심사 결과 “갑”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유지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인증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인증계약 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증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3. 인증 품목 대상을 갱신하였을 경우 본 인증 계약도 동일한 갱신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보며, “을”은 새로운 인증서를 “갑”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용 제품의 제공)

“갑”은 “을”이 제품 심사 시 시험용 제품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을”은 시험 등에 의해 생긴 “갑”의 시험용 제품 등의 해체 및 손상에 대해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사후관리)

1. “을”은 “갑”의 인증서에 기재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업무규정에 의거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2. “을”은 원칙적으로 “갑”에게 사전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은 “갑”이 사후관리의 목적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사전에 “갑”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3. “갑”은 인증을 유지(갱신)하고자하는 경우 인증서에 기재된 사후관리 심사기한의 만료일 3개월 전에 만료 예정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별도 인증서에 사후관리 심사 만료일이 표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 만료일은 인증 유효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4. “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 확인을 위해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

며,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심사를 할 수 있다.

5. “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업무규정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6. “갑”은 “을”이 사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시간 내에 “을”이 필요로 하는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관한 사내표준, 관리기록 등을 확인하거나 시험·검사기록 등을 열람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7. “을”은 사후관리시 “갑”의 공장 또는 사업장의 종업원에 적용되는 안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을”은 “갑”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갑”은 사후관리에 관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의 범위 등의 추가 또는 사업장 등의 변경의 조치)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관하여 인증범위의 추가 및 공장·사업장의 이전 시 “을”과 “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갑”은 이미 인증 받은 품목의 제품에 대한 그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을 추가하여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하고자 하는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을 인증 신청서에 기재하여 “을”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갑”로부터 해당 추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해당 추가 부분에 관한 현장심사 및 성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실시하고 인증결정 여부의 결과를 “갑”에게 통지한다. “을”은 인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계약의 체결 내용을 변경하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갑”은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을”에게 해당 공장·사업장 이전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갑”으로부터 해당 이전 심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해당 신청 부분에 관한 현장심사 및 성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 심사를 실시하고 인증결정 여부의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인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계약의 체결내용을 변경하고 “을”은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 법률 및 인증심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의 조치)

1. FIFA 규정 및 (사)대한축구협회의 기준이 개정·변경된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 대하여 그 개정·변경 사실과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방법은 문서 또는 인터넷 등 열람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2. “갑”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 또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의 검토 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해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갑”은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협회가 개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인증심사기준의 개정 내용이 인증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서 검토 결과 인증제품의 생산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인증 또는 인증취소의 공표 등)

1. “을”은 “갑”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인증 정보를 “을”의 홈페이지 또는 인증 종합 포털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공표의 기간은 이 인증 계약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 (1) 인증번호
 - (2) 업체명
 - (3) 대표자 성명
 - (4) 공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
 - (5)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표준명, 표준번호,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 (6) 인증에 관계되는 관련 법령(「산업표준화법」)의 근거 조항
 - (7) 인증서 교부일
 - (8) 협회명
2. “을”은 “갑”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인증업무규정에 의거하여 인증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을”의 홈페이지 또는 인증 종합 포털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 (1)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번호
 - (2)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업체명
 - (3)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대표자 성명

- (4)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공장 또는 사업장 소재지
- (5)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
- (6)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서 교부일
- (7)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협회명
- (8) 취소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이유

제11조(심사 등에 대한 손해)

“을”은 심사 시에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인증심사 업무의 위탁)

“을”은 “갑”의 인증심사 업무의 일부를 외부 공인 시험·검사기관, 외부 인증심사원 등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위의 승계)

1. “갑”이 제3자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다.
2. “갑”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을”에게 지위 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의 처리)

1. “을”이 인증한 “갑”의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로 인해 “을”이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을”과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은 그 책임을 전부 부담한다.
2. “을”이 인증한 “갑”의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로 인해 “을”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 기타의 부담을 질 경우, “갑”은 “을”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구상권에 부응하여 즉시 “을”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3. “을”은 제3자의 이의신청 또는 분쟁에 관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 등이 해당 및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갑”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등 제3자의 모든 불만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을”이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의 유지)

“을”은 “갑”의 인증과 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정보에 대해 “을”의 인증 업무에만 사용 하여야 하며, “갑”의 승낙 또는 관련 법령 근거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

제16조(마크 등의 허위표시)

“을”은 “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해당 사항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갑”은 시정을 완료한 후 “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업체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업체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자체 제조한 제품 또는 자체 제공한 서비스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2. 인증업체가 자체 제조한 제품 또는 자체 제공한 서비스를 다른 인증업체의 제품 또는 서비스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 자체에 또는 그 제품의 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4. 인증 받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의 계약서·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인증 받은 제품·서비스 이외의 제품·서비스의 광고에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고 오해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제17조(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 시정조치)

1. “을”은 “갑”의 공장 또는 사업장이 제16조의 마크 등의 허위표시를 한 경우 “갑”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을”은 해당 시정조치 요청시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하지 않았을 때, 기한(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조치를 완료한 취지의 보고가 “갑”으로부터 이뤄지지 않거나 보고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1. “을”은 “갑”의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 및 확인심사·특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갑”은 핵심품질 평가항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마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갑”은 부적합한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마크를 표시하는 인증제품을 출하해서는 안되고 부적합한 인증서비스에 대해서는 마크를 표시하여 제공해서도 안 된다.

3. “을”은 “갑”이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 등이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제1항의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의 취소, 정지, 개선명령 등)

1. “을”은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건(KFA-QP-11) 또는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처리(KFA-QP-15)의 규정에 따라 “갑”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 정지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2. “을”은 1항의 인증 취소 외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갑”이 “을”에 대한 채무결제(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를 이행할 수 없을 때
 - (2) “갑”이 “을”과 체결한 인증계약에 위반한 때

제20조(인증업체의 의견 제출 절차)

1. “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취소를 하고자 하는 이유, 인증위원회 개최일(해당 인증의 취소 여부 결정일), “갑”의 이의신청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을 사전에 “갑”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해당 인증의 취소에 대해서 이의 신청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인증 취소를 최종 결정한다.

제21조(인증취소와 관련되는 조치)

“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갑”의 취소된 인증제품의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홍보물 또는 인증서비스의 계약서·납품서·보증서·홍보물에 인증마크 등의 표시를 제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을”에 대한 “갑”의 기타 보고 의무)

“갑”은 이 인증 계약의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4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5호의 경우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자가 그 제조 또는 제공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 사업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을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등의 처분에 대한 개선조치결과
5. 연간 「인증 제품·서비스 생산·판매 실적보고서」 및 품질관리 활동 결과
6. 제품인증의 경우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변경사항 (이 경우 보고 후 “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기타 협회의 장이 인증심사기준 또는 인증 업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23조(“갑”에 대한 “을”의 기타 통지 의무)

“을”은 이 인증계약의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정하는 시기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을”이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 승계시키는 경우, 지위승계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2. “을”이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협회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3. “을”이 인정취소 또는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벌금형·징역형·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을 때 즉시

제24조(인증에 관계되는 비용)

1. “갑”이 “을”에 지불하는 인증 및 인증 유지를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을”이 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2. “갑”은 현장심사를 실시하기 전(또는 제품 샘플을 시험기관이 수령하기 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납부 받은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을”이 현장심사 개시 이후와 현장심사를 받은 후에 인증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25조(인증 계약의 해제)

“을”은 “갑”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인증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을”에게 문서로 이 계약의 해제를 신청하여 “을”에게 도착했을 때
2. 제19조에 의거하여 “을”이 “갑”의 인증을 취소할 때
3. “갑”과 “을”의 사이의 신뢰 관계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26조(불가항력에 의한 인증 계약의 종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을”의 인증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27조(본 인증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관례를 따르되,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8조(합의 관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을”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9조(기타)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날인 후 1통씩을 보유한다.

인증 계약 체결일: 0000년 00월 00일

“갑”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을”

단 체 명 : (사)대한축구협회

주 소 : 서울 종로구 경희궁길 46

대 표 자 : 정 몽 규 (인)